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47 발의년월일 : 2021.10.27. 발 의 자 : 이태손 의원

> 김원규 의원 김지만 의원 의원 양영애 의원 이망부 의원 이영문 의원 황순자

1. 개정 이유

지역 과학기술 진흥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과학 기술진흥 전담조직의 지정과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관련법 개정 및 대구 시 현실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 지역과학기술진흥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지역 과학기술진흥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확산을 강화함.(안 제19조)

나. 관련법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를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로, "매년 다음연도의"를 "연도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이하"법"을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시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인사"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1회에 한해"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을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으로, "당연직"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59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5장 "성과관리"를 "과학기술진흥사업 관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성과관리의 목적)"을 "(과학기술진흥사업 관리의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분야 및 지역산업육성분야사업에 대하여 성과관리를 실시하여"를 "과학기술진흥사업의 관리를 실시하여"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과관리는"을 "과학기술진흥사업 관리는"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전담조직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를 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 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전담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 2. 과학기술진흥사업의 발굴ㆍ기획 및 수요조사
 - 3. 과학기술진흥사업의 투자 조사 · 분석
 - 4.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성과 조사 · 분석

- 5.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수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 6. 과학기술진흥사업 관련 DB 구축·관리(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및 환류체계 구축
- 7.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2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가"를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로 한다.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게 정 안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u>과학기술진</u>	① <u>대구광역시 과</u>
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u>매년 다</u>	<u>연도별</u>
<u>음연도의</u>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u>「과학</u>	② 「과학기
<u>기술기본법」(이하"법"</u> 이라	<u>술기본법」(이하 "법"</u>
한다) 제7조·제8조 및 <u>같은 법</u>	<u>같은 법 시행</u>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	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설치) <u>대구광역</u>	제7조(위원회의 설치) <u>시장은</u>
<u>시(이하 "시"라 한다)의</u> 종합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에 관련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	
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과학기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3
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과학기술진흥업무	<u>국장</u>

담당 <u>본부장</u>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인사</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 며, 당연직의 임기는 위원이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 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u>통할한다</u>.

② (생략)

제1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 방자치법」<u>제142조의 규정에</u> 의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 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 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과학기술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한 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② (생 략)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10고(개원의 H/1) 한 차례만
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u>전임</u>
위원 임기의 남은 당연직
<u>위원</u>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u>총</u> 괄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의 설치)
제159조에 따라
<u> </u>
·.
제1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해서는 <u>「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u>칙」을 준용한다.

제5장 성과관리

- 제17조(성과관리의 목적) 시의 재 정이 수반되는 <u>과학기술분야 및</u> 지역산업육성분야 사업에 대하 여 성과관리를 실시하여 시비 지원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 제18조(실시범위) <u>성과관리는</u> 과학기술분야 및 지역산업육성분 야 사업 중 시비가 지원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 1. ~ 3. (생략)
- 제19조(성과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8조와 관련된 사업에 대 하여 지역산업에 대한경제적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기관을 지정할 수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성과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제5장 <u>과학기술진흥사업 관리</u>
제17조(과학기술진흥사업 관리의
<u>목적)</u>
 과학기술진흥사업의 관리를 실
 시하여
•
제18조(실시범위) <u>과학기술진흥</u>
사업 관리는

1. ~ 3. (현행과 같음)

- 제19조(전담조직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를 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전담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 다.

- 1. 시 지원사업의 기획 및 수요 조사분석
- 2. 시 지원사업의 평가 · 성과관 리 등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0조(과학기술진흥 유공자 포 제20조(과학기술진흥 유공자 포 상) ① (생략)
 -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구광」 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 1.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 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 2. 과학기술진흥사업의 발굴 · 기획 및 수요조사
- 3. 과학기술진흥사업의 투자 조 사 · 분석
- 4.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성과 조 사 · 분석
- 5.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수행실 태 점검 및 성과평가
- 6. 과학기술진흥사업 관련 DB 구축·관리(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및 환류 체계 구축
- 7.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 하는 사업
- 상) ① (현행과 같음)
 - ② ------「대구광역 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
- | 제21조(시행규칙) ------
 - 필요하 -----

관계 법 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3조(지역과학기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지역의 과학기술연구 · 교육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 3.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